

부 산 지 방 법 원

제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8가합44933 공사대금 등 청구의소

원 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형

피 고 1.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이승재, 이미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희진

2.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현

담당변호사 김재윤

변 론 종 결 2020. 8. 26.

판 결 선 고 2020. 11. 1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D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13,395,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2020. 11.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주식회사 B에게 43,0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6.부터 2020. 11.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 주식회사 A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D가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B과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7/8은 원고 주식회사 B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D가 각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1.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26,574,9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주식회사 B에게 377,656,2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선박의 건조, 판매 및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선박 건조, 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 주식회사 A(상호가 'E 주식회사'였다가 2016. 1. 2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선박 제조업,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선박임가공업, 조선기자재 제작 및 납품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당사자들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의 지급

1) 피고 C은 선주로부터 선박건조를 의뢰받으면 피고 D에게 피고 C의 F 공장 내의 건조 선박별 D/HOUSE 공사를 하도급하고 있었고(위 하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시 피고 D은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원고 A과 사이에 별지 1 원고 A 계약내역 기재와 같이 선각공사에 대해, 원고 B과 사이에 별지 2 원고 B 계약내역 기재와 같이 철의장공사에 대해 각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위 각 재하

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2) 원고들은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 D으로부터 약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3)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공사(품질저하 등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추가공사는 제외한 것으로 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도 수행하였는데, 그 추가공사의 정산은, 먼저 추가공사가 완료된 후 원고 A은 Feedback Sheet(오작, 수정, 추가)에, 원고 B은 부적합보고서(Non Conformance Report)에 작업한 시수, 투입된 비용 등 추가 작업 내역을 기재하여 피고 D에게 교부하면 피고 D이 피고 C과 작업시수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적정한 금액을 산정한 후 피고 C으로부터 정산금을 받아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사건 처리결과

원고들은 피고 C과의 거래가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들과의 관계에 있어 피고 C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원사업자로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절차를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7, 23, 25,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6호증, 을나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 중 일부에 관하여 피고 D과 원고들 사이에 정산합

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각 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추가공사, 크레인 고장 또는 에어그라인더 성능 저하, 정반 관련 작업으로 인한 공사대금 또는 손해액에 대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의 합의가 포함되어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정산합의서가 작성된 공사에 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과 같은 중대한 소송 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나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들과 사이에 별지 1, 2 원고 A 계약내역, 원고 B 계약내역 중 '정산합의서'란에 증거가 기재된 공사들에 대한 정산합의서들(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의 공사들에 관한 것으로서, 이하 '재하도급계약 정산합의서들'이라 한다), 그 외 공사들에 관한 정산합의서들(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들에 관한 것으로서, 이하 위 정산합의서들을 '기타 정산합의서들'이라 한다)¹⁾을 각 작성한 사실, 위 각 정산합의서에는 '을(원고 A 또는 원고 B을 의

1) H, I, J, K, L, M호선 관련 각 형강류 절단 작업(을나 제15호증의 9 내지 13, 15, 20, 24, 27, 29, 30, 33, 37, 39, 43), N 거주구 선각 개정작업 공사 건(을나 제15호증의 35), O 선주 EXTRA 공사 건 - FUNNEL MARK 수정(을나 제15호증의 36), M ANGLE 절단작업(영도이관분, 을나 제15호증의 42), J 거주구 선각 NCR 공사(을나 제15호증의 52), P D/HOUSE 관철 공사

미한다)은 상기 공사건으로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재하도급계약 정산합의서들의 경우 피고 D이 원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과 같은 계약명, 계약금액으로 정산이 이루어졌는바, 위와 같이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문구는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명시된 정산금 액수로 정함에 있어 피고 D과 원고들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자연스럽고,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 외에 이 사건 추가공사까지 포괄하여 정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가공사가 발생한 경우 원고들이 먼저 공사를 수행한 후 Feedback Sheet, 부적합보고서(Non Conformance Report)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과는 별도로 정산이 이루어진 점, 기타 정산합의서들에 기재된 호선이나 공사명의 표기가 아래에서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추가공사들의 그것과는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타 정산합의서들도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나 이 사건 추가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별개의 공사들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위 각 정산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은 당해 공사에 관한 채권채무관계에 한정되고 아래에서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이나 손해배상액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나아가 피고들의 위 주장을 본안에 관한 정산합의 주장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하도급계약 정산합의서들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대한 것이고 기타 정산합의

(을나 제16호증의 1), Q D/HOUSE 의장 공사(을나 제16호증의 2), R D/HOUSE 관철 공사(을나 제16호증의 3), S D/HOUSE 관철 공사(을나 제16호증의 4)에 대한 각 정산합의서

서들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나 이 사건 추가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별개의 공사들에 관한 것이어서, 아래에서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한 정산합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3.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1) 물량변동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원고 A과 피고 D은 톤(ton)당 단가를 정해두고 추후 물량 변동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R, T, U, V, J, K호선의 설계물량이 계약시 정한 물량보다 증가되었으므로, 피고 D은 원고 A에게 추가로 발생한 물량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으로 48,431,799원(= R, T호선 각 6,031,748원 + U, V호선 각 8,866,133원 + J호선 9,324,134원 + K호선 9,311,9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D은 피고 C으로부터 공사대금 정산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에게 위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동액 상당을 이익으로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위 추가 공사대금 상당인 48,431,7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피고 C은 피고 D이 원고 A에게 공유한 피고 D의 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원고 A에게 설계변경에등으로 인한 이 사건 추가공사 작업을 지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추가 공사대금 134,44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은 원고 A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추가 작업을 이행하도록 하였고, 피고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위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피고 C은 동액 상당을 이익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원고 A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피고 C은 부당이득금으로, 위 추가 공사대금 상당인 134,44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크레인 고장으로 인한 추가 비용

피고 D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C이 소유한 크레인을 원고 A에게 제공하였으나, 크레인의 빈번한 고장으로 인하여 원고 A은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인건비 등 비용으로 99,726,90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있어 피고 C은 사실상 피고 D을 중간 하도급업체로 형식상 넣었을 뿐 직접 원고 A에게 업무를 지시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 A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연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크레인 고장으로 인한 추가 비용 99,726,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서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A에게 위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C은 동액 상당을 이익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원고 A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피고 C은 부당이득금으로, 위 추가 비용 상당인 99,726,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에어그라인더의 공기압 저하로 인한 추가 비용

피고 D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C이 관리하는 공기탱크에 연결하여 사

용하는 에어그라인더를 원고 A에게 제공하였으나, 공기압이 적정한 수준으로 제공되지 않아 원고 A은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인건비 등 비용으로 43,968,25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있어 피고 C은 사실상 피고 D을 중간 하도급업체로 형식상 넣었을 뿐 직접 원고 A에게 업무를 지시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 A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연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공기압 저하로 인한 추가 비용 43,968,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서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A에게 위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C은 동액 상당을 이익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원고 A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피고 C은 부당이득금으로, 위 추가 비용 상당인 43,968,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정반 관련 작업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피고 C은 원고 A에게 정반 관련 작업을 요구하는 경우 피고 D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총 공사대금 중 20,99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들은 원고 A과 위 정반 관련 작업에 관한 각 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연대하여 위 미지급 공사대금 20,99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서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A에게 위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C은 동액 상당을 이익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원고 A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피고 C은 부당이득금으로, 위 미지급 작업대금 상당인 20,99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들은 ① 원고 A으로 하여금 직접 피고 C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마진을 가져가는 피고 D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② 계약한 물량이 변경되었음을 원고 A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며, ③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추가공사를 선이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④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한 시간당 단가를 일방적으로 책정하였으며, ⑤ 크레인 고장이나 공기압 부족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⑥ 원고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서로 공사대금 지급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원고 A과 거래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23조 제4호를 위반하였으므로, 공정거래법 제56조 또는 민법에 의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원고 A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C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의한 '원사업자'이고 원고 A은 '수급사업자'인바 피고 C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제3조를 위반한 행위이고, 그 대금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도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그런데 위 위반행위는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C은 원고 A에게 위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계약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A뿐만 아니라 원고 B도 공통적으로 피고 C에 대해

여 계약상 채무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있는바, 그에 앞서 이 사건 추가공사에 있어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계약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7, 40, 43, 93호증, 을가 제2, 6, 7호증, 을나 제1호증,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의 F 공장에서 상황에 따라 정반 이동 및 개조작업,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작업 등 긴급한 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 C 소속 직원들이 원고들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한 사실, F 공장 내 회의에 원고들의 직원들이 참석하여 공사진행 상황이나 문제점 등을 직접 보고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공사에 있어서도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재하도급계약과 같이 '피고 C ↔ 피고 D ↔ 원고들' 형태로 작업지시와 작업수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과 원고들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재하도급계약에 의해 '피고 C ↔ 피고 D ↔ 원고들' 형태로 작업지시 및 수행이 이루어졌고, 각 공사에 임하는 원고들이나 피고들의 직원들도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㉔ 피고 C은 피고 D에게 D/HOUSE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위 하도급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이에 피고 C은 피고 D을 통해 원고들에게 작업지시를 하게 되고, 원고들은 피고 D을 통해 피고 C에게 공사를 이행하게 되는 구조가 된다. 실제 피고 C의 F 공장에서 피고 C은 피고 D에게 변경설계 도면 교부 등 필요한 작업지시를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재하도급업체들이 피고 D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피고 D

이 다시 원고들에게 작업지시를 하는 과정이 단축되어 작업지시가 신속해지고 명료해지는 결과가 된다.

㉔ 피고 D의 현장소장 G이 피고 C에게 원고들을 비롯한 하청업체별로 별도의 작업지시용 메일계정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었으나, 피고 C은 그러한 요청을 거절하고 피고 D에게만 작업지시에 관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원고 B의 직원은 피고 D의 이메일계정을 이용하여 피고 C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자신을 "D/B" 소속으로 표기하였다.

㉕ 피고 C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설계도면을 F 공장 내 도면보관 장소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피고 D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들은 위 장소에서 도면을 열람·복사하여 사용하였을 뿐 피고 C으로부터 직접 설계도면을 교부받지는 않았다.

㉖ 피고 C의 회의록에는 원고 B이 피고 D 소속으로 참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직원들이 피고 D 측 인원으로서 피고 C의 회의에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들 사이에서 체결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개정 및 추가발생작업'은 피고 D이 시공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설계변경, 정반작업 등에 의한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피고 C의 작업지시 및 피고 D측(원고들)의 작업 이행으로써 별도의 공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㉗ F 작업현장에서 작업장 부족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정반 이동 및 개조작업,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작업 등 긴급히 필요한 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 C의 관리자들은 원고들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하기도 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완료 후 원고 A은 Feedback Sheet에, 원고 B은 부적합보고서(Non

Conformance Report)에 작업한 시수, 투입된 비용 등 추가 작업내역을 기재하여 피고 D에게 교부하면 피고 D이 피고 C과 작업시수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적정한 금액을 산정한 후 피고 C으로부터 정산금을 받아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㉞ 피고 C은 이 사건 소재기 이후에도 원고들이 아닌 피고 D만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추가공사 중 일부에 대한 공사대금을 공탁하였다.

③ 결국 피고 C이 사실상 원고들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한 것은 '피고 C → 피고 D → 원고들'의 작업지시과정이, 반대로 원고들이 F 공장에서 이 사건 추가공사 작업을 수행한 것은 '원고들 → 피고 D → 피고 C'의 작업수행과정이 각 단축된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물량변동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부분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갑 제9 내지 18, 47 내지 68, 84 내지 86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① 피고 D은 원고 A과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 중 D/HOUSE 선각 부분의 대금을 톤(ton)당 단가로 책정하되 향후 물량증감에 따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D과 원고 A 사이의 기성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계약물량('확정물량'란)은 R, T호선의 경우 각 565.2톤, U, V, J, K호선의 경우 각 615.3톤인 점, ② 'P호선과 R, T호선', 'U, V, J, K호선'은 시리즈호선(하나의 설계도면으로 만드는 선박의 디자인이 거의 동일한 동행선)인데, 피고 C은 피고 D에게 2016. 12. 7. U호선의 설계중량(HULL MODELING)을 636.433톤, 2016. 12. 23. P호선의 설계중량을 579.963톤으로 기재한 메일을 보냈던 점, ③ 위 선각공사를 구성하는 소조립, 중&대조립, 선행탑재작업의 계약금액을 계약물량으로 나누면 톤(ton)당 단가를 산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구한 단가는 기성산출내역서에 기

재된 소조립, 중&대조립, 선행탐제작업의 IMS단가(공종별단가, 단위는 ton당) 합계액과도 거의 일치하는 점²⁾, ④ 피고 D의 현장소장이었던 증인 G이 '원고 A과 피고 D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 체결시 톤(ton)당 약 40만 원 정도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통은 설계도면이 작성 중일 때 공사작업이 시작되므로 오차가 생길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오차가 크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지만 일부 호선의 경우 오차가 좀 생겼던 것으로 기억한다. 위 물량증감액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작업이나 수정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피고 D과 원고 A이 약정한 설계물량이 최종적으로 증가하였으므로 피고 D은 원고 A에게 추가 공사대금 47,602,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호선	계약물량	설계물량	물량차이	계약단가		손해액
					톤당 단가	계산식	
1	R	565.2	579.963	14.763	408,572원	= '별지 1 원고 A 계약내역 순번 13 내지 15 기재 공급가액 합계 230,927,000원 ÷ 565.2톤보다 적은 금액으로서 원고 A이 구하는 단가	6,031,748원
2	T	565.2	579.963	14.763	408,572원	= '별지 1 원고 A 계약내역 순번 16 내지 18 기재 공급가액 합계 230,927,000원 ÷ 565.2톤보다 적은 금액으로서 원고 A이 구하는 단가	6,031,748원
3	U	615.3	636.433	21.133	409,975원	= 별지 1 원고 A 계약내역 순번 19 내지 21 기재 공급가액 합계 252,258,000원 ÷ 615.3톤	8,664,001원
4	V	615.3	636.433	21.133	409,975원	= 별지 1 원고 A 계약내역 순번 22 내지 24 기재 공급가액 합계 252,258,000원 ÷ 615.3톤	8,664,001원
5	J	615.3	636.433	21.133	431,153원	= 별지 1 원고 A 계약내역 순번 37 내지 39 기재 공급가액 합계 265,289,000원 ÷ 615.3톤	9,111,556원
6	K	615.3	636.433	21.133	430,588원	= 별지 1 원고 A 계약내역 순번 44 내지 46 기재 공급가액 합계 264,941,000원 ÷ 615.3톤	9,099,616원

2) 기성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단가는 시기별로 다소 변동이 있으나 그 합계액에 있어서는 아래 예시 금액과 큰 차이가 없다.

R호선 : D/H 소조립 66,279원 + D/H 중대조립 177,953원 + 탐재 165,094원 = 409,326원(갑 제50호증, 3~5쪽)

T호선 : D/H 소조립 66,281원 + D/H 중대조립 177,947원 + 탐재 164,709원 = 408,937원(갑 제53호증, 6~8쪽)

U호선 : D/H 소조립 64,268원 + D/H 중대조립 179,442원 + 탐재 166,285원 = 409,995원(갑 제55호증, 5~7쪽)

K호선 : D/H 소조립 62,334원 + D/H 중대조립 190,886원 + 탐재 177,426원 = 430,646원(갑 제61호증, 6~8쪽)

합 계	47,602,670원
-----	-------------

[물량단위 : 톤(ton), 원 단위 미만 버림]

한편 원고 A이 F 공장에서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나 이 사건 추가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원고들 → 피고 D → 피고 C'의 급부과정이 단축된 형태로 이루어진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이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 D이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채무불이행을 넘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관련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부분에 대한 판단

1) 추가 공사대금 청구 부분

가) 인정 부분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247, 249, 250, 269, 272, 273, 284, 333 내지 34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감정인 W의 감정 및 보완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 A은 별지 3 원고 A 추가공사내역 기재와 같이 여러 추가공사를 수행하였는데, 피고 C은 그 중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품질 불량,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추가공사로 인정하지 않았고,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각 추가공사에 대한 인정작업시수를 산정하되 그 중 일부 추가공사의 공사대금을 피고 D에게 지급한 점, ② 그런데 별지 3 원고 A 추가공사내역 중 피고 C이 이 사건 추가공사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의 공사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추가', '변경', '수정' 작업임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 A이 작성한 Feedback Sheet의 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③ 특히 시리즈선박에 있어 같은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 C이 각 선박별로 인정한 작업시수들이 비슷하지 않고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피고 C이 인정한 작업시수는 더욱 믿기 어려운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가공사 역시도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재하도급계약과 같이 '피고 C ↔ 피고 D ↔ 원고 A' 형태로 작업지시와 작업수행이 이루어진 점, ⑤ 원고 A이 이 사건 추가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작업시수가 합계 4,029시간(= 공사대금 전액이 미지급된 공사 부분 2,516시간 + 피고 C이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 부분 1,513시간³⁾)인 점, ⑥ 피고 D과 원고 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적용된 노임단가가 1시간당 13,000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D은 원고 A에게 추가 공사대금 52,377,000원(= 4,029시간 × 1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과 원고 A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위 추가 공사대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나) 불인정 부분

원고 A은 아래 표 기재 각 공사내역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도 구하고 있으나, 감정인 W의 감정 및 보완감정 결과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 각 공사내역은 앞서 가)항에서 본 '인정 부분'과 중복되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감정 신청 번호	관련호선	공사기간	공사내역	원고A주 장시수	C인정시 수	감정산정 시수	비 고
----------------	------	------	------	-------------	-----------	------------	-----

3) 원고 A은 2020. 2. 25.자 준비서면(3쪽)에서 피고 C이 작업시수를 임의 감축하여 일부 공사대금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감정 과정에서 피고 C이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지급한 일부 공사대금을 원고 A이 수령하였다거나 피고 D이 원고 A에게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피고 C이 피고 D을 위하여 일부 공사대금을 공탁하였으나 이 역시도 원고 A을 위한 것이 아니다), 피고 D의 미지급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는 감정 결과에 의해 이 사건 추가공사로 인정된 작업시수 전부를 미지급금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016	S- B#1907	15.09.24. -15.09.30.	RENEW 작업	116	0	0	018 중복
074	Q - B#2901	15.06.17. -15.06.18.	AP-52, 809 부재 추가	32	0	0	001 중복
075	Q - B#2901	15.07.08. -15.07.08.	HOLE RENEW 작업	12	0	0	002 중복
076	Q - B#2901	15.06.13. -15.06.13.	HOLE RENEW 작업	12	0	0	003 중복
077	Q - B#2905	15.07.02. -15.07.03.	HOLE 축소	24	0	0	004 중복
078	Q - B#2905	15.07.02. -15.07.03.	FRONT WALL(F45T) STEP SIZE (ST25→ST20) 변경	34	0	0	005 중복
079	Q - B#3905	15.06.27. -15.06.27.	HOLE 커팅	12	0	0	006 중복
080	Q - B#1906	15.07.03. -15.07.04.	R30 SIZE DRAIN HOLE CUTTING 23POIN 작업	46	0	0	007 중복
081	Q - B#1906	15.07.01. -15.07.01.	HOLE RENEW(매공)	12	0	0	008 중복
082	Q - B#1907	15.06.03. -15.06.03.	F.B(Flat Bar) 추가	12	0	0	009 중복
083	Q - B#1907	15.07.17. -15.07.17.	FR21~FR22 OFF C.L 900~1800 DECK부(S) 500*300 절단 후 결속	6	0	0	010 중복
084	Q - B#1999	15.05.20. -15.05.24.	MARKING 작업	34	0	0	011 중복
085	Q - D/HOUSE	15.06.18. -15.06.23.	GUTTER WAY 시공	48	0	0	012 중복
합 계				400	0	0	

또한 원고 A은 아래 표 기재 각 공사내역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도 구하고 있으나, 갑 제329호증의 기재, 감정인 W의 감정 및 보완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과 피고 D 사이의 하도급계약의 공사내용에 MONORAIL 공사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OMMENT 작업은 본질적으로 시공과정상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고 보통 추가 설계도면 없이 이루어지는데, 원고 A이 이 사건 추가공사로 주장하고 있는 COMMENT 작업은 현장에서 상주하는 전주 감독관에 의한 수시검사 과정에서 선주가 요구하는 수준의 품질로 시공되지 않아 재시공을 요청함으로써 동일한 부분에 대해 여러 번 수정 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COMMENT 작업의 작업시수는 단순한 수정 작업으로 보

기에는 이례적으로 과다해 보이거나, 앞서 본 COMMENT 작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이 주장하는 작업시수 전부를 설계변경 등에 준하는 이 사건 추가공사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아래 표 기재 각 공사내역을 이 사건 추가공사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감정 신청 번호	관련호선	공사기간	공사내역	원고A주 장시수	C인정시 수	감정산정 시수	비 고
045	U - B#1904	16.02.26. -16.03.15.	MONORAIL 공사	468	0	0	자료 부족으로 감정 불가
062	V - B#1904	16.04.25. -16.05.10.	MONORAIL 공사	468	0	0	자료 부족으로 감정 불가
091	X - D/HOUSE	16.04.21. -16.06.16.	COMMENT 작업	2,162	0	0	자료 부족으로 감정 불가
합 계				3,098	0	0	

2)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원고 A이 F 공장에서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나 이 사건 추가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원고들 → 피고 D → 피고 C'의 급부과정이 단축된 형태로 이루어진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이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 C이 피고 D 및 원고 A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이 이 사건 추가공사를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며, 피고 D이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채무불이행을 넘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관련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크레인 고장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분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은 피고 C으로부터 하도급받은 D/HOUSE 조립 등 작업과 관련하여 피고 C의 크레인 4대가

설치되어있는 F 공장 작업장을 사용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 중 일부 공사의 경우 피고 D이 원고 A에게 작업수행에 필요한 크레인을 제공할 의무가 있었던 사실, 피고 D은 위 작업장 내 위치한 피고 C 소유의 크레인들을 원고 A에게 제공하였고 원고 A은 위 크레인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9, 44호증, 을가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크레인 고장과 추가 Man Hour 투입자료'(갑 제19호증)에는 2015. 3. 5.부터 2016. 11. 20.까지 총 297회의 고장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A의 현장소장 Y의 사실확인서(갑 제44호증)에도 크레인의 잦은 고장으로 작업효율이 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 A이 작성한 문서와 원고 A의 직원의 진술이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② 반면 피고 C이 제출한 '크레인별 정비·수리·점검 이력사항'(을가 제4호증)에는 총 38회의 정비 및 수리이력만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노후부품 교체나 사용 부주의, 조작미숙에 의한 수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 ③ F 공장에서 피고 D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한 증인 G은 '크레인은 평소에 잘 작동하였으나, 가끔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어 중형물 이동에 제한이 있어 작업에 많은 차질이 생겼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 측의 귀책사유로 크레인 고장이 발생하여 원고 A의 작업이 지연되었다는 점이나 그러한 지연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 A이 F 공장에서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나 이 사건 추가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원고들 → 피고 D → 피고 C'의 급부과정이 단축된 형태로 이루어

진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이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들이 원고 A에게 크레인 고장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관련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에어그라인더의 성능저하로 인한 추가 비용 부분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은 피고 C으로부터 하도급받은 D/HOUSE 조립 등 작업과 관련하여 피고 C의 에어그라인더가 비치된 F 공장 작업장을 사용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상 피고 D은 원고 A에게 자재, 장비, 공구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위 작업장에 설치된 에어그라인더도 위 범위에 포함되는 사실, 피고 D은 위 에어그라인더를 원고 A에게 제공하였고 원고 A은 이를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 위 에어그라인더의 적정 공기압력은 $6\text{kg}/\text{cm}^2$ 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① '에어그라인더 공기압 부족과 추가 Man Hour 투입자료'(갑 제20호증)에는 2015. 7. 15.부터 2016. 8. 31.까지 414일 중 70일(=약 16.9%)에 걸쳐 총 584시간동안 공기압이 부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A의 현장소장 Y의 사실확인서(갑 제44호증)의 기재도 이에 부합하나, 이는 원고 A이 작성한 문서와 원고 A의 직원의 진술이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② F 공장 공압실에 설치된 AIR COMPRESSOR가 공장 내의 각 작업장들까지 배관을 통해 공기를 공급하는데, 공압실 직원들에 의해 기록된 공압실 운전일지(을가 제5호증)에는

2015. 7. 25. 오전 9시경 일시적으로 토출압력이 5.0kg/cm²였던 것 외에는 토출 공기 압력이 6~7kg/cm² 이상으로 계속 유지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③ 증인 G은 '가끔씩 공기압을 높이기 위한 장비인 컴프레서가 고장이 나는 등으로 에어그라인더의 공기압이 적정수치에 미치지 못해 작업진행에 어려움이 생긴 적이 있고, 경우에 따라 그라인더공들이 조기퇴근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원고 A 측 증거들에 기재된 내용과는 빈도수 측면에서 상당히 다른 점, ④ 원고 A은 다른 작업장에서 에어그라인더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원고 A이 사용하는 작업장에 공급되는 공기압이 적정수치 이하로 떨어진다고도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 측의 귀책사유로 에어그라인더 공기압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원고 A의 작업이 지연되었다는 점이나 그러한 지연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 A이 F 공장에서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나 이 사건 추가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원고들 → 피고 D → 피고 C'의 급부과정이 단축된 형태로 이루어진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이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들이 원고 A에게 에어그라인더 공기압 저하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관련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사. 정반 관련 작업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부분에 대한 판단

갑 제22, 44호증, 을가 제2,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F 공장의 작업장이 부족하거나 규격에 따라 정반의 이동 및 개조가 필요한 경우 피고 C의 직원들이 원고 A에게 필요한 정반 관련 작업을 요청하면 원고 A이 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재하도 급계약상 원고 A의 업무 범위인 '탑재용 정반/반목설치/해체'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② 정반 관련 작업을 완료한 후 원고 A이 Feedback Sheet를 작성하여 피고 D을 통해 피고 C에게 교부하면 피고 C이 피고 D에게 해당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다시 피고 D이 원고 A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C의 F 공장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정반 관련 작업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C도 위 정반 작업의 대금과 관련하여 원고 A이 주장하는 정반 관련 공사내역 중 일부에 대해서는 피고 D에게 변제공탁을 하였던 점, ④ 원고 A이 정반 관련 공사내역이라고 주장하는 내용(갑 제22호증) 중 U호선에 대한 88시간(= 원고 A 주장 344시간 - 정반 이동작업 64시간 - 정반제작 192시간), H호선에 대한 192시간에 대해서는 Feedback Sheet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과 원고 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적용된 노임단가가 1시간당 13,000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은 원고 A에게 정반 작업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으로 13,416,000원[= 1,032시간(= 원고 A 주장 1,312시간 - 88시간 - 192시간) × 1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D에 대한 이 부분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과 원고 A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위 추가 공사대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 A이 F 공장에서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나 이 사건 추가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원고들 → 피고 D → 피고 C'의 급부과정이 단축된 형태로 이루

어진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이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 D이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채무불이행을 넘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관련 청구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사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 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되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공정거래법 제5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는데(공정거래법 제23조 제3항),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 2] 제6호는 위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의 유형으로 '구입강제(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이익제공강요(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판매목표강제(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불이익제공(위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와 제3항 및 그에 근거한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 2] 제6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

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20812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C이 피고 D과 원고 A 사이의 재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원고 A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앞서 판단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부당이득에 기한 각 청구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를 거절하였다거나 일방적으로 거래상 불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 A과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공정거래법 및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아.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추가공사에 있어서도 '피고 C ↔ 피고 D ↔ 원고 A' 형태로 작업지시와 작업수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 C과 원고 A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 C은 하도급법 제2조상의 발주자, 피고 D은 원사업자, 원고 A은 수급사업자로 볼 수밖에 없는바, 피고 C과 원고 A의 관계에서는 피고 C을 원사업자로 볼 수 없어 하도급법 제3조, 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도급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 A의 위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자. 소결론

따라서 피고 D은 원고 A에게 추가 공사대금으로 합계 113,395,670원(= 설계물량 증가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47,602,670원 +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52,377,000원 + 정반 작업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13,4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2017. 12. 7.부터 피고 D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의 주장

1)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피고 C은 피고 D이 원고 B에게 공유한 피고 D의 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원고 B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를 지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추가 공사대금 172,481,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은 원고 B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추가 작업을 이행하도록 하였고, 피고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위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C은 동액 상당을 이익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원고 B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피고 C은 부당이득금으로, 위 추가 공사대금 상당인 172,481,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재공급 등 지연으로 인한 손해

원고 B이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재공급, 선행작업 및 검사의 지연, 설계도면의 오류 및 누락 등 피고들의 귀책사유에 의해 인건비 등 비용으로 185,758,357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있어 피고 C은 사실상 피고 D을 중간 하도급업체로 형식상 넣었을 뿐 직접 원고 B에게 업무를 지시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 B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연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인건비 등 비용 185,758,3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 B에게 돌판작업과 연장근로를 통해 공사를 공기 내에 마치도록 강요하였으면서도 서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B에게 위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C은 동액 상당을 이익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원고 B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피고 C은 부당이득금으로, 위 인건비 등 비용 상당인 185,758,3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화재로 소실된 자재 대금 상당의 손해

피고들은 피고 C의 F 작업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소실된 자재 가액 19,416,479

원을 원고 B의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였는데 이는 피고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감액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재가액 상당인 19,416,4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들은 ① 원고 B으로 하여금 직접 피고 C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마진을 가져가는 피고 D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②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추가공사를 선이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③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한 시간당 단가를 일방적으로 책정하였으며, ⑤ 원고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 없다는 이유로 서로 공사대금 지급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원고 B과 거래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 제4호를 위반하였으므로, 공정거래법 제56조 또는 민법에 의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원고 B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C은 하도급법에 의한 '원사업자'이고 원고 B은 '수급사업자'인바 피고 C이 원고 B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제3조를 위반한 행위이고, 그 대금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도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그런데 위 위반행위는 원고 B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C은 원고 B에게 위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283, 286, 30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감정인 W의 감정 및 보완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 B은 별지 4 원고 B 추가공사내역 기재와 같이 여러 추가공사를 수행하였는데, 피고 C은 그 중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중복 공사, 품질 불량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추가공사로 인정하지 않았고,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각 추가공사에 대한 인정작업시수를 산정하되 그 중 일부 추가공사의 공사대금을 피고 D에게 지급한 점, ② 그런데 별지 4 원고 B 추가공사내역 중 피고 C이 이 사건 추가공사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의 공사내역을 살펴보면 '설치', '작업'으로 명시되어 있고 원고 B이 작성한 부적합보고서(Non Conformance Report)의 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③ 별지 4 원고 B 추가공사내역 1.항의 감정신청번호 013에 대해서는 피고 C은 감정신청번호 012의 공사와 중복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감정인은 중복되지 않는 별개의 공사라고 판단한 점, ④ 특히 시리즈선박에 있어 같은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 C이 각 선박별로 인정한 작업시수들이 비슷하지 않고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피고 C이 인정한 작업시수는 더욱 믿기 어려운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가공사 역시도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재하도급계약과 같이 '피고 C ↔ 피고 D ↔ 원고 B' 형태로 작업지시와 작업수행이 이루어진 점, ⑥ 원고 B이 이 사건 추가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작업시수가 합계 3,312시간(= 공사대금 전액이 미지급된 공사 부분 3,044시간 + 피고 C이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 부분 268시간⁴⁾)인 점, ⑦ 피고 D과 원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적용된 노임단가가 1시간당 13,000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D은 원고 B

4) 원고 B은 2020. 2. 25.자 준비서면(3쪽)에서 피고 C이 작업시수를 임의 감축하여 일부 공사대금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감정 과정에서 피고 C이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지급한 일부 공사대금을 원고 B이 수령하였다거나 피고 D이 원고 B에게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피고 C이 피고 D을 위하여 일부 공사대금을 공탁하였으나 이 역시도 원고 B을 위한 것이 아니다), 피고 D의 미지급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감정 결과에 의해 이 사건 추가공사로 인정된 작업시수 전부를 미지급금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에게 추가 공사대금 43,056,000원(= 3,312시간 × 1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D에 대한 이 부분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과 원고 B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위 추가 공사대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 B이 F 공장에서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나 이 사건 추가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원고들 → 피고 D → 피고 C'의 급부과정이 단축된 형태로 이루어진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이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 C이 피고 D 및 원고 B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이 이 사건 추가공사를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며, 피고 D이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채무불이행을 넘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관련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자재공급 등 지연으로 인한 손해 부분에 대한 판단

갑 제25, 40, 98 내지 10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D의 계약상 의무인 자재 제공, 선행작업의 수행 및 검사과정의 지연, 도면 누락 등(이하 '자재 제공 등 사유'라 한다)이 있었던 사실, 피고 D과 원고 B 사이의 이 사건 재하도급 계약 중 다수의 공사에 있어 약정된 공사기간을 초과하여서야 공사가 완료된 사실, 피고 D이 원고 B에게 완공시점이 지연된 것에 관한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B이 작성한 작업일보(갑 제125 내지 152호증)를 비롯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이 주장하는 대기 비용 및 추가 인건비 등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나 위 손해와 자재 제공 등 사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위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과 원고 B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위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도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 B이 F 공장에서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나 이 사건 추가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원고들 → 피고 D → 피고 C'의 급부과정이 단축된 형태로 이루어진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이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 C이 피고 D 및 원고 B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이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 및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자재 제공 등 사유를 발생시켰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며, 자재 제공 등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관련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화재로 소실된 자재 대금 상당의 손해 부분에 대한 판단

을가 제8호증, 을나 제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 5. 8. F 공장의 작업장에 있던 자재로서 ATOMOS DRAIN TANK TEMP CONTROL VALVE 1set, FEED WATER CONTROL VALVE 1set(이하 '이 사건 밸브'라 한다)가 화재로 인해 소손된 사실, 이 사건 밸브의 재구입비용은 운송료를 포함하여 19,416,479원인 사실, 피고 C은 피고 D에게 관련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이 사건 밸브의 재구입비용을 공제하여 지급하였고, 피고 D도 원고 B에게 지급하는 공사대금에서 동액을 공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6호증의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밸브가 소손되었던 화재는 당시 원고 B 소속 직원이 GPE 관련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용접 불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는 피고 D이 GPE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할 의무를 부담하며 각종 기기류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 피고 D이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의무부담은 피고 D과 실질적 작업수행주체인 원고 B 사이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서도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질적 작업수행주체인 원고 B 소속 직원이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밸브를 수령하여 작업현장 주변에서 사실상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밸브의 소손에 대한 책임은 원고 B에게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B의 위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마.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3. 사.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C이 피고 D과 원고 B 사이의 재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원고 B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앞서 판단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부당이득에 기한 각 청구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를 거절하였다거나 일방적으로 거래상 불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 B과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공정거래법 및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바.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추가공사에 있어서도 '피고 C ↔ 피고 D ↔ 원고 B' 형태로 작업지시와 작업수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 C과 원고 B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 C은 하도급법 제2조상의 발주자, 피고 D은 원사업자, 원고 B은 수급사업자로 볼 수 밖에 없는바, 피고 C과 원고 B의 관계에서는 피고 C을 원사업자로 볼 수 없어 하도급법 제3조, 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도급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 B의 위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 D은 원고 B에게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43,0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 B이 구하는 2017. 2. 6.부터 피고 D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현

판사 최 영

판사 이순혁

별지 1

원고 A 계약내역

순번	계약서상 계약체결일	호선	공사명	공급가액 (부가세 별도)	공사 시작일	공사 종료일	정산합의서
1	2015.10.1.	Q	Q D/HOUSE 선각 NCR 공사	1,319,000	2015.10.2.	2015.10.10.	
2	2015.9.22.	Q	Q D/HOUSE 선각 NCR 공사(HOLE PEREW 건)	190,000	2015.9.22.	2016.2.29.	을나 15-3
3	2015.5.22.	S	S D/HOUSE 소조립 작업	36,683,000	2015.5.25.	2015.8.31.	
4	2015.5.29.	S	S D/HOUSE 중&대조립 작업	98,485,000	2015.6.1.	2015.8.31.	
5	2015.6.18.	S	S D/HOUSE 선행탑재공사	90,997,000	2015.7.15.	2015.10.31.	
6	2015.8.20.	N	N D/HOUSE 소조립 작업	36,683,000	2015.8.21.	2015.11.30.	
7	2015.8.21.	N	N D/HOUSE 중&대조립 작업	98,485,000	2015.8.24.	2015.12.31.	
8	2015.8.21.	N	N D/HOUSE 선행탑재공사	90,997,000	2015.8.23.	2015.10.30.	
9	2015.10.19.	O	O D/HOUSE 소조립 작업	36,683,000	2015.10.21.	2015.11.30.	
10	2015.10.19.	O	O D/HOUSE 중&대조립 작업	98,485,000	2015.10.21.	2015.12.18.	
11	2015.10.14.	O	O D/HOUSE 선행탑재공사	90,997,000	2015.11.10.	2016.2.1.	을나 15-5
12	2015.11.6.	P	P D/HOUSE 선각 NCR 공사	582,000	2015.11.9.	2015.11.30.	
13	2014.4.8.	R	R D/HOUSE 소조립 작업	37,455,000	2015.4.8.	2015.7.31.	
14	2015.4.1.	R	R D/HOUSE 중&대조립 작업	100,559,000	2015.4.1.	2015.7.31.	
15	2015.4.8.	R	R D/HOUSE 선행탑재공사	92,913,000	2015.4.8.	2015.9.30.	
16	2015.8.25.	T	T D/HOUSE 소조립 작업	37,455,000	2015.9.1.	2015.10.30.	
17	2015.8.25.	T	T D/HOUSE 중&대조립 작업	100,559,000	2015.9.10.	2015.11.30.	
18	2015.9.3.	T	T D/HOUSE 선행탑재공사	92,913,000	2015.9.30.	2015.11.30.	
19	2015.11.9.	U	U D/HOUSE 소조립 작업	39,545,000	2015.11.10.	2015.11.30.	
20	2015.11.11.	U	U D/HOUSE 중&대조립 작업	110,420,000	2015.11.15.	2015.12.24.	
21	2015.11.20.	U	U D/HOUSE 선행탑재공사	102,293,000	2015.11.23.	2016.1.31.	을나 15-4
22	2015.12.31.	V	V D/HOUSE 소조립 작업	39,545,000	2016.1.4.	2016.2.15.	을나 15-6
23	2015.12.31.	V	V D/HOUSE 중&대조립 작업	110,420,000	2016.1.28.	2016.2.29.	을나 15-7
24	2015.12.31.	V	V D/HOUSE 선행탑재공사	102,293,000	2016.1.25.	2016.2.29.	을나 15-8
25	2015.11.3.	S	S D/HOUSE WINDOW BOX설치를 위한 추가작업	119,000	2015.11.4.	2016.2.29.	을나 15-34
26	2015.11.27.	Z	Z D/HOUSE 선각 NCR 공사	1,717,000	2015.11.30.	2015.12.3.	을나 15-1

27	2015.11.27.	AA	AA D/HOUSE 선각 NCR 공사	2,309,000	2015.11.30.	2015.12.4.	을나 15-2
28	2016.3.30.	H	H D/HOUSE 소조립 작업	35,988,000	2016.3.31.	2016.5.21.	을나 15-16
29	2016.3.21.	H	H D/HOUSE 중&대조립 작업	96,619,000	2016.3.22.	2016.5.21.	을나 15-17
30	2016.3.31.	H	H D/HOUSE 선행탑재공사	89,275,000	2016.4.2.	2016.5.17.	을나 15-23
31	2016.5.26.	I	I D/HOUSE 소조립 작업	35,988,000	2016.7.15.	2016.10.30.	을나 15-31
32	2016.5.23.	I	I D/HOUSE 중&대조립 작업	96,619,000	2016.7.15.	2016.10.30.	을나 15-32
33	2016.5.23.	I	I D/HOUSE 선행탑재공사	89,275,000	2016.7.15.	2016.10.30.	
34	2016.7.22.	U	U 거주구 선각 개정공사 건	716,000	2016.7.25.	2016.8.15.	을나 15-38
35	2015.10.11.	V	V거주구 선각 NCR 공사	1,664,000	2016.10.12.	2016.10.31.	을나 15-45
36	2016.8.23.	V	V거주구 선각 NCR 공사	1,664,000	2016.8.23.	2016.11.30.	을나 15-49
37	2016.4.8.	J	J D/HOUSE 소조립 작업	38,355,000	2016.4.10.	2016.4.25.	을나 15-14
38	2016.4.14.	J	J D/HOUSE 중&대조립 작업	117,798,000	2016.4.15.	2016.5.20.	을나 15-21
39	2016.4.29.	J	J D/HOUSE 선행탑재공사	109,136,000	2016.4.30.	2016.5.25.	을나 15-22
40	2015.10.11.	J	J거주구 선각 NCR 공사	247,000	2016.10.12.	2016.10.31.	을나 15-46
41	2016.8.22.	J	J거주구 선각 NCR 공사	1,248,000	2016.8.23.	2016.11.30.	을나 15-50
42	2016.8.23.	J	J거주구 선각 NCR 공사	416,000	2016.8.23.	2016.11.30.	
43	2016.9.9.	J	J거주구 선각 NCR 공사	559,000	2016.9.12.	2016.11.30.	을나 15-51
44	2016.5.9.	K	K D/HOUSE 소조립 작업	38,355,000	2016.5.10.	2016.8.30.	을나 15-25
45	2016.5.9.	K	K D/HOUSE 중&대조립 작업	117,450,000	2016.5.10.	2016.8.30.	을나 15-26
46	2016.5.9.	K	K D/HOUSE 선행탑재공사	109,136,000	2016.5.10.	2016.8.30.	을나 15-28
47	2015.10.11.	K	K거주구 선각 NCR 공사	247,000	2016.10.12.	2016.10.31.	을나 15-47
48	2016.3.3.	X	X D/HOUSE 소조립 작업	19,976,000	2016.3.4.	2016.5.30.	
49	2016.3.15.	X	X D/HOUSE 중&대조립 작업	63,184,000	2016.3.16.	2016.5.30.	
50	2016.3.18.	X	X D/HOUSE 선행탑재공사	62,040,000	2016.3.21.	2016.5.30.	을나 15-19
51	2016.7.15.	L	L D/HOUSE 소조립 작업	34,710,000	2016.7.17.	2016.9.30.	을나 15-40
52	2016.7.15.	L	L D/HOUSE 중&대조립 작업	101,460,000	2016.7.17.	2016.10.31.	을나 15-41
53	2016.7.22.	L	L D/HOUSE 선행탑재공사	90,780,000	2016.7.25.	2016.9.30.	
54	2016.8.31.	M	M D/HOUSE 소조립 작업	34,710,000	2016.9.1.	2016.11.30.	을나 15-44
55	2016.8.31.	M	M D/HOUSE 중&대조립 작업	101,460,000	2016.9.1.	2016.11.30.	을나 15-48
56	2016.9.31.	M	M D/HOUSE 선행탑재공사	90,780,000	2016.9.1.	2017.1.30.	

원고 B 계약내역

순번	계약서상 계약체결일	호선	공사명	공급가액 (부가세 별도)	공사 시작일	공사 종료일	정산합의서
1	2015.5.27.	Q	Q D/HOUSE 관철공사	951,498	2015.5.30	2015.8.31	
2	2015.6.29.	S	S D/HOUSE 관철공사	7,922,603	2015.6.29	2015.10.31	
3	2015.11.11.	S	S D/HOUSE NCR 공사	155,000	2015.11.12	2016.2.29	을나 16-11
4	2015.8.25.	N	N D/HOUSE 관철공사	110,640,000	2015.9.18	2015.12.30	을나 16-5
5	2015.10.19.	O	O D/HOUSE 관철공사	110,640,000	2015.11.21	2016.3.25	을나 16-9
6	2015.9.29.	Z	Z D/HOUSE NCR 공사	226,000	2015.9.30	2015.10.3	을나 16-6
7	2015.3.18.	P	P D/HOUSE 관철공사	3,342,264	2015.3.20	2015.6.10	
8	2015.11.3.	P	P D/HOUSE 관철공사 NCR 공사 (D/H E/CASING CARING 추가건 외)	831,000	2015.11.4	2016.2.29	을나 16-10
9	2015.6.9.	R	R D/HOUSE 관철공사	60,269,217	2015.6.10	2015.10.31	
10	2015.8.31.	T	T D/HOUSE 관철공사	108,000,000	2015.9.1	2015.12.31	을나 16-7
11	2016.5.2.	T	T D/HOUSE NCR 공사	1,306,000	2016.5.3	2016.5.12	을나 16-13
12	2016.4.14.	H	H D/HOUSE 관철공사	108,154,000	2016.4.15	2016.8.31	
13	2015.11.27.	U	U D/HOUSE 관철공사	142,256,000	2015.11.30	2016.4.30	을나 16-8
14	2015.12.18.	U	U D/HOUSE 관철공사 (POOP DECK 추가분)	6,464,000	2015.12.21	2016.2.29	을나 16-12
15	2016.7.22.	U	U 거주구 외장 개정공사 건	519,000	2016.7.25	2016.8.15	
16	2016.1.21.	V	V D/HOUSE 관철공사	148,720,000	2016.1.25	2016.7.28	
17	2016.4.18.	J	J D/HOUSE 관철공사	147,030,000	2016.4.25	2016.7.30	
18	2016.5.19.	K	K D/HOUSE 관철공사	145,340,000	2016.5.20	2016.8.30	
19	2016.3.3.	X	X D/HOUSE 관철공사	138,498,000	2016.3.4	2016.6.15.	
20	2016.7.18.	X	X D/HOUSE NCR 공사	1,383,000	2016.7.19	2016.9.28	

원고 A 추가공사내역

1. 공사대금 전액이 미지급된 공사 부분

감정 신청 번호	관련호선	공사기간	공사내역	원고A주 장시수	C인정시 수	감정산정 시수	비 고
002	Q - B#2901	15.07.08. -15.07.08.	HOLE RENEW 작업	12	9	12	
003	Q - B#2901	15.06.13. -15.06.13.	HOLE RENEW 작업	12	9	12	
005	Q - B#2905	15.07.02. -15.07.03.	FRONT WALL(F45T) STEP SIZE (ST25-ST20) 변경	34	10	28	
006	Q - B#3905	15.06.27. -15.06.27.	HOLE CUTTING 작업	12	9	12	
008	Q - B#1906	15.07.01. -15.07.01.	HOLE RENEW(메공)	12	9	12	
009	Q - B#1907	15.06.03. -15.06.03.	F.B(Flat Bar) 추가	12	0	8	C 품질 불량, 자료 부 족 등으로 시수 산정 안함
011	Q - B#1999	15.05.20. -15.05.24.	MARKING 작업	34	0	8	C 품질 불량, 자료 부 족 등으로 시수 산정 안함
012	Q - D/HOUSE	15.06.18. -15.06.23.	GUTTER WAY 시공	48	0	38	C 품질 불량, 자료 부 족 등으로 시수 산정 안함
013	S - B#1908	15.09.02. -15.09.12.	H-BEAM 이동 및 구조 변경	200	140	168	
015	S - B#1907	15.09.02. -15.09.12.	H-BEAM 이동 및 구조 변경	134	72	96	C 013 과 중복으로 판 단 이후 별개로 인정. 시수 산정 안 됨 감정서발행 후에야 72 로 시수산정 의견 밝 힘
017	S - B#2901	15.10.01. -15.10.02.	HEAD ROOM 공간 확보	16	18	16	
018	S - B#2901	15.11.06. -15.11.14.	RENEW 작업	116	120	96	
019	N - B#3901	15.11.12. -15.11.18.	RENEW 작업	116	24	96	
020	N - B#1906	15.12.16. -15.12.19.	STIFFNER 추가	52	17	52	
022	N - B#1906	15.09.21. -15.09.24.	COMMENT로 인한 하부 보강 추가	40	10	32	
023	N - B#1908	15.09.04. -15.09.15.	H-BEAM 이동 및 구조 변경	206	72	144	
024	N - B#1907	15.09.04. -15.09.15.	H-BEAM 이동	130	48	48	
026	T - B#2901	15.09.23. -15.09.26.	STIFFENER 이동 및 추가 설치	77	14	67	

027	T - B#2901	15.10.20. -15.10.22.	10300 GIRDER 부재 위치 이동	22	5	17	
028	T - B#1907	15.12.30. -15.12.31.	STIFFENER 용접 등	22	7	17	
029	T - B#2901	16.01.06. -16.01.09.	STIFFENER 추가 및 절단	18	5	14	
030	T - B#1907	16.01.06. -16.01.09.	STIFFENER 추가	16	5	12	
031	U - B#1903	15.12.08. -15.12.15.	WALL WIDE GAP 발견	144	0	100	C 품질 불량, 자료 부 족 등으로 시수 산정 안함
032	U - B#1903	15.11.05. -15.11.09.	DOOR 추가 및 HOLE 확공	68	28	37	
033	U - B#1902	15.12.11. -15.12.20.	BRAKE TEST KIT 추가 및 STIFF	247	31	196	
034	U - B#1903	15.09.21. -15.09.24.	CHEMICAL LOCKER 추가	168	0	136	C 품질 불량, 자료 부 족 등으로 시수 산정 안함
035	U - B#1905	15.12.11. -15.12.19.	STIFFENER 변경	140	0	56	C 품질 불량, 자료 부 족 등으로 시수 산정 안함
040	U - B#1907	15.12.28. -15.12.30.	STIFFENER 추가	12	2	9	
041	U - B#1908	15.12.28. -15.12.31.	STIFFENER 추가	12	2	9	
044	U - B#1905	16.02.19. -16.02.27.	구조 변경 및 HOLE 메공	38	6	6	
046	U - B#3904	16.03.07. -16.03.08.	HOLE RENEW 작업	12	0	9	C 품질 불량, 자료 부 족 등으로 시수 산정 안함
047	U - B#1909	16.03.07. -16.03.09.	300MM 메공	36	11	36	
052	U - B#1905	16.02.21. -16.03.05.	구조 변경 및 HOLE 메공	6	6	6	
053	V - B#1908	16.03.08. -16.03.10.	300mm 메공	80	11	52	
054	V - B#1909	16.03.08. -16.03.10.	300mm 메공	80	10	36	
055	V - B#1904	16.03.07. -16.03.10.	300mm 메공	12	10	12	
061	V - B#1902	16.04.02. -16.04.02.	BKT 절단	8	6	8	
066	J - B#1909	16.05.04. -16.05.04.	BNK 절단	2	2	2	
069	J - B#1908	16.06.28. -16.06.28.	NAV BRI DECK 부재 추가	28	20	28	
073	K - B#1908	16.07.02. -16.07.03.	NAV BRI DECK 부재 추가	28	10	24	
086	K - COMPASS DK	16.07.02. -16.07.03.	COMPASS DECK 수정	84	36	54	
	X - B#1905	16.03.02. -16.03.15.	FRONT WALL BANDING 오작 건	212	80	154	신청번호 한 건에 NCR 2 건 임

087	X - #1904	16.03.20. -16.03.24.	RENEW 건	110	25	48	
088	X - B#1903	16.03.20. -16.03.24.	RENEW 건	58	14	48	
089	X - B#1905	16.03.23. -16.03.28.	RENEW 건	68	30	68	
090	X - B#1902	16.03.24. -16.03.26.	FR37 ANGLE FLANGE 수정	104	56	80	
092	X - B#1906	16.03.24. -16.03.26.	RENEW 건	14	2	14	
093	X - B#1904	16.05.10. -16.05.12.	ANGEL FLANGE CUTTING 건	16	3	9	
094	X - B#1905	16.05.10. -16.05.17.	SIDE WALL 임시 확공	74	39	56	
	X - #1907	16.05.10. -16.05.17.	CASING CARILING 추가	70	14	54	신창번호 한 건에 NCR 2 건 임
095	L - B#1909	16.05.10. -16.05.17.	CASING CARILING 추가	10	0	8	C 품질 불량, 자료 부 족 등으로 시수 산정 안함
096	L - B#1904	16.07.18. -16.07.18.	HOLE CUTTING	13	0	10	C 품질 불량, 자료 부 족 등으로 시수 산정 안함
097	L- B#1908	16.07.21. -16.07.23.	LANGE 방향 변경	14	0	11	C 품질 불량, 자료 부 족 등으로 시수 산정 안함
098	L- B#1907	16.07.27. -16.07.27.	FR11 SEC(S) STIFF 수정	16	0	12	C 품질 불량, 자료 부 족 등으로 시수 산정 안함
099	L - B#1908	16.08.30. -16.08.30.	FR11 SEC(S) STIFF 수정	12	0	9	C 품질 불량, 자료 부 족 등으로 시수 산정 안함
100	L - B#1905	16.09.29. -16.09.29.	WINDOW HOLE SIZE 변경	20	0	12	C 품질 불량, 자료 부 족 등으로 시수 산정 안함
101	L - B#1906	16.09.29. -16.09.29.	ANGEL FLANGE 절단	8	0	6	C 품질 불량, 자료 부 족 등으로 시수 산정 안함
102	M - B#1905	16.09.30. -16.09.30.	WINDOW HOLE SIZE 변경	20	0	12	C 품질 불량, 자료 부 족 등으로 시수 산정 안함
103	M - B#1903	16.10.20. -16.10.23.	구조 변경	30	0	20	C 품질 불량, 자료 부 족 등으로 시수 산정 안함
104	M - B#1907	16.12.26. -16.12.28.	GYMNASIUM 내 부재 방향 변경	80	0	64	C 품질 불량, 자료 부 족 등으로 시수 산정 안함
합 계				3,495	1,057	2,516	

2. 피고 C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 부분

감정 신청 번호	관련호선	공사기간	공사내역	원고A주 장시수	C인정시 수	감정산정 시수	비 고
001	Q - B#2901	15.06.17. -15.06.18.	AP-52, 809 부재 추가	32	16	28	
004	Q - B#2905	15.07.02. -15.07.03.	HOLE 축소	24	12	19	
007	Q - B#1906	15.07.03. -15.07.03.	R30 SIZE DRAIN HOLE CUTTING 23 POINT 작업	46	40	40	
010	Q - B#1907	15.07.17. -15.07.17.	BOILER 커팅 후 탑재	6	4	6	
014	S - B#1906	15.09.19. -15.09.12.	STIFFENER 설치	28	10	25	
021	N - B#2901	15.10.01. -15.10.04.	HEAD ROOM 공간 확보	26	18	26	
025	O	15.04.30. -15.05.07.	FUNNEL MARK MARKING 작업	460	191	310	
036	U - B#1903	15.12.28. -15.12.29.	STIFFENER 추가	12	2	9	
037	U - B#2904	15.12.28. -15.12.29.	STIFFENER 추가	12	2	9	
038	U - B#1905	15.12.28. -15.12.30.	STIFFENER 추가	12	2	9	
039	U - B#1906	15.12.28. -15.12.30.	STIFFENER 추가	12	2	9	
042	U - B#1906	16.02.19. -16.02.26.	HOLE 메공	172	64	140	
043	U - B#1907	16.02.19. -16.02.27.	HOLE 메공	142	64	134	
048	U - B#1909	16.03.08. -16.03.15.	STIFF 이동	68	34	60	
049	U - B#1999	16.03.09. -16.03.15.	PROTECTION BAR 추가	16	16	16	
050	V - B#1906	16.02.21. -16.02.28.	HOLE 메공	172	64	140	
051	V - B#1907	16.02.21. -16.03.01.	HOLE 메공	142	64	134	
056	V - B#1909	16.03.09. -16.03.12.	STIFF 위치 이동	68	6	60	

057	V - B#1999	16.04.02. -16.04.03.	PROTECTION 추가	16	16	16	
058	V - B#2901	16.04.02. -16.04.05.	S5 추가	50	25	41	
059	V - B#1902	16.04.10. -16.04.14.	HOLE 설계추가	120	50	68	
060	V - B#2901	16.04.14. -16.04.17.	2 EA 추가	46	29	46	
063	V - B#1909	16.05.04. -16.05.04.	BKT 절단	6	2	6	
064	J - B#1902	16.04.12. -16.04.12.	HANDLING 구조 변경	12	12	12	
065	J - B#1909	16.05.04. -16.05.04.	2EA 추가	14	12	14	
067	J - B#1902	16.05.26. -16.05.27.	GARBAGE ROOM DOOR OPENING 확공	16	10	16	
068	J - B#1902	16.06.20. -16.06.20.	L18, L19 부강재 추가	12	9	12	
070	J - B#1903	16.07.01. -16.07.05.	FDN 추가	52	19	46	
071	K - B#1902	16.05.28. -16.05.29.	GARBAGE ROOM DOOR OPENING 확공	16	16	16	
072	K - B#1903	16.07.06. -16.07.10.	FDN 추가	52	19	46	
합 계				1,862	830	1,513	

원고 B 추가공사내역

1. 공사대금 전액이 미지급된 공사 부분

감정 신청 번호	관련호선	공사기간	공사내역	원고B주 장시수	C인정시 수	감정산정 시수	비 고
001	P	15.03.24. -15.03.25.	DUCT HOLE 설치	47	26	26	
002	P	15.03.24. -15.03.25.	STEEL PIPE 설치	37	12	12	
003	P	15.03.27. -15.03.27.	SPIRAL DUCT 설치	37	2	8	
004	P	15.04.14. -15.04.16.	PIPE SUPPORT HOLE 설치	37	5	5	
005	P	15.10.24. -15.10.25.	PVC PIPE 추가 제작	47	20	20	
006	P	15.08.14. -15.08.16.	PASSAGE DOOR STEP 설치	77	12	40	
007	S	15.09.07. -15.09.10.	MANUAL LEVER SUP'T 제작/설치	42	5	20	
008	S	15.08.28. -15.08.29.	PVC PIPE SUP'T 설치	42	7	16	
009	S	15.08.26. -15.08.27.	STORM RAIL 설치	47	14	26	
010	S	15.09.08. -15.10.16.	PIPE 2 PC'S 설치	77	50	58	
011	S	15.09.08. -15.10.16.	PIPE 2 PC'S 설치	77	10	30	
012	S	15.09.14. -15.10.16.	PIPE 3 PC'S 설치	62	47	47	
013	S	15.09.14. -15.10.16.	PIPE 3 PC'S	62	20	47	C 012 중복 판단 공사 범위 다름. 감정 서발행 후에야 20으로 시수산정 의견 밝힘
014	S	15.09.14. -15.10.16.	HAND RAIL 설치	57	24	28	
015	S	15.09.14. -15.10.16.	LIFTING LUG 설치	57	2	16	
016	S	15.09.14. -15.10.16.	LIFE BOAT PLATFFORM 설치	78	58	58	
017	S	15.09.14. -15.10.16.	PIPE END 연장 수정	40	7	12	
018	S	15.10.08. -15.10.23.	COVER 추가 작업	40	16	16	
019	S	15.10.20. -15.10.21.	HYDRANT V/V CAP TYPE 교체 작업	28	5	8	
020	S	15.10.16. -15.10.18.	SHELF 이동	52	10	16	
021	S	15.09.20. -15.10.18.	STORM RAIL 설치	66	13	40	
022	S	15.09.01. -15.09.01.	SUP'T용 PIPE 작업	310	250	264	
023	R	15.10.05. -15.10.16.	PIPE 설치	62	10	18	

024	R	15.09.10. -15.10.16.	ELBOW PC'S 사용 철거	44	2	4	
025	R	15.10.26. -15.10.30.	SUP'T용 PIPE 작업	340	112	136	
026	R	15.09.16. -15.10.07.	PIPE 철거	90	10	86	
027	R	15.09.16. -15.09.18.	PIPE 철거	50	10	28	
028	R	15.09.16. -15.10.08.	PIPE 철거	90	14	50	
029	R	15.09.16. -15.09.18.	BA LINE 추가	56	10	42	
030	R	15.10.26. -15.11.01.	SUP'T용 PIPE 설치	134	10	116	
031	R	15.11.12. -15.11.12.	SUP'T 해체/이동 설치	76	19	72	
032	N	15.11.11. -15.11.12.	SCUPPER 시공	62	5	52	
033	N	15.12.04. -16.02.19.	SEAT 해체	46	10	28	
034	N	16.12.02. -16.12.21.	MANUAL HOLE 및 LOUVER VENT 설치	88	14	82	
035	N	15.12.31. -16.01.05.	SCUPPER 설치	90	5	82	
036	N	16.11.09. -16.11.10.	HAND RAIL 철거	46	5	26	
037	N	16.01.14. -16.01.15.	STORM RAIL 10 PC'S 철거	60	10	26	
038	T	15.12.02. -15.12.28.	PIPE 라인 해체	70	14	70	
039	T	15.12.02. -15.12.28.	PIPE 라인 해체	34	5	16	
040	T	15.12.02. -15.12.28.	VENT 설치	56	11	56	
041	T	16.01.12. -16.01.12.	HAND GRIP 설치	26	2	8	
042	T	16.02.02. -16.02.08.	COPPER PIPE 및 SUP'T 설치	64	19	28	
043	T	16.02.02. -16.02.08.	PIPE 설치	44	10	16	
044	O	15.12.03. -16.03.03.	SEAT 재설치	38	10	28	
046	U	16.04.20. -16.05.23.	AQ03-10.11 및 SUP'T 설치	50	22	22	
047	U	15.12.17. -15.12.26.	PVC PIPE 해체	150	24	140	
049	U	16.06.03. -16.06.03.	PIPE 설치	58	23	36	
050	U	16.03.02. -16.03.10.	PIPE 설치	82	25	32	
051	U	16.05.13. -16.05.14.	SEAT 설치	62	8	50	
052	U	16.04.04. -16.05.15.	HAND GRIP 설치	50	4	16	
053	U	16.02.23. -16.02.24.	FLAT BAR 설치	60	18	22	
054	V	15.12.17. -15.12.26.	PVC PIPE 해체	146	55	140	

055	V	16.06.03. -16.06.03.	AQ19-002 PC'S와 SUP'T 설치	54	34	36	
056	V	16.03.02. -16.03.10.	PIPE 설치	80	2	32	
057	V	16.05.13. -16.05.14.	SEAT 설치	74	18	50	
058	V	16.04.04. -16.05.15.	HAND GRIP 설치	46	12	16	
059	V	16.02.23. -16.02.24.	FLAT BAR 설치	58	16	22	
060	X	16.06.02. -16.06.02.	SCUPPER PIPE 설치	58	28	58	
061	X	16.09.14. -16.09.14.	SUP'T COMMENT 수정	38	5	22	
062	X	16.06.04. -16.06.04.	LASHING WIRE 추가	54	23	40	
063	X	16.06.04. -16.06.04.	X-MAS TREE STEP 설치	70	19	52	
065	X	16.07.04. -16.07.04.	PIPE 설치	66	17	42	
066	X	16.07.04. -16.07.04.	PIPE 설치	84	0	64	C 품질 불량 주장
067	X	16.06.02. -16.06.02.	FLEXIBLE HOSE 설치	32	10	10	
068	X	16.06.03. -16.06.03.	U.S.C.G BOX 추가 설치	38	13	30	C 시수 산정 안 되었 으나 감정서발행 후에 야 13으로 시수산정 의견 밝힘
069	X	16.07.10. -16.07.10.	BRANCH 작업	66	0	66	C 품질 불량 주장
070	X	16.07.28. -16.07.28.	DUCT 라인 해체	64	24	48	
071	X	16.09.14. -16.09.14.	GOOSENECK VENT 설치	44	20	20	
072	X	16.07.10. -16.07.10.	B.H.D UNION 추가 및 F/B 설치	50	30	30	
073	X	16.05.10. -16.05.10.	SLEEVE 추가	34	12	12	
074	X	16.07.12. -16.07.12.	PIPE 설치	28	26	28	
075	S	15.08.07. -15.08.17.	STEEL PIPE 오작	47	25	25	
합 계				4,828	1,445	3,044	

2. 피고 C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 부분

감정 신청 번호	관련호선	공사기간	공사내역	원고B주 장시수	C인정시 수	감정산정 시수	비 고
045	U	16.03.16. -16.04.12.	PIPE 라인 해체	72	17	52	
048	U	16.03.31. -16.04.15.	PIPE 라인 해체	88	12	56	
064	X	16.05.07. -16.05.07.	FENDER SEAT 설치	302	112	160	
합 계				462	141	268	